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목포의 밝은 미래를 꿈꾸다

예산현황 / 어린이집 / 청년지원책

2023. 06. 19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목포시 살림살이(예산)에 대하여

- 목포시 재정지표 및 예산현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 재정관련 심의위원회 심의현황
- 향후 재정위기상황 시 대응책은?
-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합 계	655,468	100	743,354	100	774,237	100	806,474	100	859,073	100
일반공공행정	22,760	3.47	29,826	4.01	38,736	5.00	35,052	4.35	39,274	4.57
공공질서 및 안전	3,437	0.52	3,505	0.47	5,788	0.75	5,505	0.68	7,584	0.88
교육	17,148	2.62	16,971	2.28	17,629	2.28	17,002	2.11	17,999	2.10
문화 및 관광	48,678	7.43	34,923	4.70	45,067	5.82	47,116	5.84	77,599	9.03
환경	18,788	2.87	35,938	4.83	35,469	4.58	40,623	5.04	46,914	5.46
사회복지	311,563	47.53	351,657	47.31	378,942	48.94	401,902	49.83	387,462	45.10
보건	13,963	2.13	15,260	2.05	17,675	2.28	22,352	2.77	21,890	2.55
농림해양수산	15,222	2.32	21,274	2.86	15,234	1.97	15,341	1.90	22,916	2.6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021	1.83	14,415	1.94	13,082	1.69	12,344	1.53	10,881	1.27
교통 및 물류	42,458	6.48	45,199	6.08	40,839	5.27	46,646	5.78	49,424	5.75
국토 및 지역개발	31,987	4.88	54,129	7.28	33,345	4.31	24,866	3.08	30,328	3.5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8,792	1.34	6,243	0.84	10,263	1.33	7,354	0.91	11,779	1.37
기타	108,651	16.58	114,014	15.34	122,167	15.78	130,372	16.17	135,024	15.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상황 ?

- 2023년 목포시의 세출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2% 상승한 10,600억원으로, 지난 5년 간 연평균 증가율 8.9%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재원 중 주요 증가분야는 문화 및 관광(304억원 증가), 농림해양수산 (75억원 증가), 환경(62억원 증가) 등입니다.



2023년 목포시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규모 (G=B+E)	통합재정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A)	지출(B)	용자회수(C)	용자지출(D)	순용자(E=D-C)	순세계잉여금(F)			
총계	897,490	928,741	0	30	30	28,764	928,771	△31,281	△2,517
일반회계	831,573	834,981	0	0	0	27,500	834,981	△3,408	24,092
기타 특별회계	5,134	12,687	0	0	0	75	12,687	△7,553	△7,478
공기업 특별회계	59,542	77,746	0	0	0	1,189	77,746	△18,204	△17,015
기금	1,241	3,328	0	30	30	0	3,358	△2,117	△2,117

통합재정수지란 ?

당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빠져 실제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음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적자** 지표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20,967	7,793	8,876	△17,992	△31,281
통합재정수지 2	1,458	18,840	25,968	△455	△2,517

☞ 2023년도 목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였을 경우 25억원이 적자입니다. 일반회계는 240억원 흑자이나, 기타특별회계 7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70억원, 기금 21억원이 각각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종 사용료(수도 및 하수도 등) 감소 및 감면 등으로 자체수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포시 지방재정분석 순위는? -2018 정부발표

표안



2017년
목포시 결산
종합 등급 **라등급**

	특·광역시 (8)	도 (9)	시 (75)	군 (82)	구 (69)
가 등급	인천, 세종	전북, 경남	과천, 밀양, 안산, 여주, 영천, 오산, 포천	과산, 군위, 무안, 봉화, 양양, 영별, 해남, 화천	서울) 강서, 광진, 금천, 서대문, 은평, 중랑 인천) 등
나 등급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군포, 남양주, 논산, 동두천, 동해, 부천, 삼척, 성남, 안동, 안성, 안양, 양산, 여수, 의정부, 이천, 진주	거창, (강원)고성, (경남)고성, 고령, 남해, 달성, 보성, 순창, 양구, 연천, 영광, 옥천, 의령, 인제, 장성, 홍천, 횡성	서울) 강동, 구로, 관악, 노원, 송파, 양천, 영등포, 종로 부산) 동래, 서인천) 남대전) 대덕, 서, 유성
다 등급	부산, 광주	전남, 제주	강릉, 경산, 고양, 공주, 광명, 광양, 광주, 구리, 김천, 김포, 나주, 남원, 사천, 상주, 서산, 수원, 순천, 시흥, 송인, 원주, 의왕, 청주, 춘천, 파주, 하남, 화성	강화, 고령, 고창, 곡성, 구례, 기장, 단양, 담양, 무주, 보은, 부안, 부여, 산청, 성주, 신안, 영동, 영암, 영양, 울진, 음성, 의성, 임실, 장성, 장수, 중흥, 임천, 장평, 철원, 정선, 정양, 함양, 함평, 화순	서울) 강남, 강북, 도봉,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용산, 중 부산) 금정, 북, 사상, 수영, 연제, 영도, 중, 진 대구) 동, 서, 수성, 중 인천) 계양, 남동, 연수, 광주) 중대전) 중
라 등급			거제, 경주, 군산, 김해, 목포, 문경, 보령, 아산, 영주, 정읍, 제천, 창원, 천안, 충주, 통영	가평, 금산, 서천, 양평, 영덕, 예산, 울릉, 울주, 장흥, 진도, 진안, 청도, 태안, 평창, 하동, 함안, 합천	서울) 동대문 부산) 강서, 남, 동, 사하, 해운대 대구) 남, 달서, 북 인천) 서광주) 광산울산) 남, 동, 중
마 등급			계룡, 구미, 김제, 당진, 익산, 태백, 포항	강진, 예천, 옹진, 완도, 완주, 칠곡, 홍성	인천) 부평, 중광주) 남, 북, 서대전) 중울산) 북

목포시 지방재정분석 순위는? -나라살림연구소 추출 순위



2019(FY2018)

지방재정분석 결과

* 2019(FY2018) 부터
등급을 발표하지 않음

*나라살림연구소 추출 순
위

1	경기 이천시	26	경기 의왕시	51	경북 김천시
2	전남 여수시	27	경북 영주시	52	강원 태백시
3	경기 과천시	28	충북 청주시	53	전남 광양시
4	경기 안성시	29	경기 안양시	54	충남 당진시
5	경기 화성시	30	경기 김포시	55	충남 아산시
6	경기 용인시	31	경기 오산시	56	경기 동두천시
7	충남 공주시	32	충남 논산시	57	전북 전주시
8	강원 삼척시	33	전북 정읍시	58	충남 천안시
9	경기 성남시	34	경기 군포시	59	전남 나주시
10	경기 여주시	35	경기 의정부시	60	경북 포항시
11	강원 동해시	36	경기 광주시	61	전북 김제시
12	경기 부천시	37	강원 원주시	62	경기 수원시
13	충북 충주시	38	경북 영천시	63	경기 구리시
14	강원 강릉시	39	강원 속초시	64	경북 경산시
15	경기 파주시	40	경남 양산시	65	경남 통영시
16	강원 춘천시	41	경기 안산시	66	전북 군산시
17	경북 상주시	42	경기 양주시	67	경남 창원시
18	충남 서산시	43	충남 계룡시	68	경북 문경시
19	경남 진주시	44	충남 보령시	69	경남 거제시
20	경기 광명시	45	경기 고양시	70	전남 목포시
21	경북 안동시	46	경기 하남시	71	경북 경주시
22	전북 남원시	47	충북 제천시	72	경북 구미시
23	경기 포천시	48	경기 평택시	73	전북 익산시
24	전남 순천시	49	경남 사천시	74	경남 김해시
25	경남 밀양시	50	경기 남양주시	75	경기 시흥시

목포시 지방재정분석 순위는? -나라살림연구소 추출 순위



2020(FY2019)

지방재정분석 결과

* 2019(FY2018) 부터
등급을 발표하지 않음

*나라살림연구소 추출 순
위

목포시는 70위→58위→49
위로 순위상향변동

순위	자치단체명	순위	자치단체명	순위	자치단체명	순위	자치단체명
1	경기 의정부시	20	충남 당진시	39	경기 남양주시	58	전남 목포시
2	경기 여주시	21	충남 논산시	40	경기 오산시	59	경기 용인시
3	경기 이천시	22	경기 동두천시	41	충남 서산시	60	경남 양산시
4	경기 양주시	23	전남 순천시	42	경기 부천시	61	충남 천안시
5	경남 밀양시	24	전남 여수시	43	경북 김천시	62	경북 구미시
6	강원 동해시	25	전북 남원시	44	경기 광명시	63	경북 문경시
7	강원 강릉시	26	강원 태백시	45	경기 고양시	64	경기 성남시
8	강원 삼척시	27	충남 공주시	46	강원 춘천시	65	경남 거제시
9	전남 광양시	28	경남 진주시	47	경기 수원시	66	경북 포항시
10	경기 의왕시	29	경기 구리시	48	충북 충주시	67	경기 평택시
11	전북 전주시	30	충남 보령시	49	경기 화성시	68	경기 파주시
12	경기 안성시	31	경북 경산시	50	강원 원주시	69	경북 경주시
13	경기 포천시	32	충북 제천시	51	경북 상주시	70	경기 하남시
14	강원 속초시	33	경기 안양시	52	충남 아산시	71	경남 김해시
15	경기 광주시	34	경북 영천시	53	경북 안동시	72	경기 과천시
16	전북 김제시	35	경기 안산시	54	전북 정읍시	73	경기 김포시
17	충북 청주시	36	전북 익산시	54	경남 창원시	74	충남 계룡시
18	전남 나주시	37	경기 군포시	56	경북 영주시	75	경기 시흥시
19	경남 사천시	38	전북 군산시	57	경남 통영시		

목포시 재정지표 현황- 타지역 비교



전남도 및 시군별 재정지표 비교

구분		재정 자립도 (%)	재정 자주도 (%)	주민인당 자체수입 (천원)	주민인당 지방세부담 (천원)	주민인당 세외부담 (천원)	정책사업 비중(%)	자체사업 비중(%)	보조사업 비중(%)	사회복지 비중(%)	행정운영 경비비중 (%)	의화비 비중 (%)	예비비 확보율 (%)	주민인당 세출예산 (천원)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전국 평균		45.3	68.8	2,303	2,101	202	84.7	37.4	47.3	31.66	12.63	.22	1.49	6,670	18.1
전남 평균		24.2	67.5	2,383	2,153	230	85.8	34.8	50.9	22.26	13.14	.13	2.10	12,557	37.4
전남도		26.2	40.8	1,383	1,353	29	91.4	30.8	60.6	29.64	3.16	.05	1.00	4,942	8.3
시지역 평균		21.8	57.7	1,040	877	163	84.4	25.6	58.8	34.55	13.55	.16	2.01	4,767	46.8
목포시	1,027,210	17.3	53.6	640	546	94	80.6	14.4	66.2	49.83	16.17	.21	0.91	3,689	71.2
여수시	1,458,940	29.3	60.5	1,298	1,128	171	84.4	29.7	54.7	36.71	14.44	.23	2.09	4,423	36.5
순천시	1,571,257	17.8	58.0	745	569	176	86.1	26.8	59.3	33.60	12.87	.12	1.46	4,191	53.7
나주시	908,976	16.8	57.8	1,192	991	200	84.2	25.3	58.9	28.47	13.45	.11	1.12	7,087	61.6
광양시	1,173,061	25.3	57.0	1,582	1,384	197	85.9	28.8	57.1	25.14	11.06	.09	4.29	6,240	33.3
시 최고	순천시	여수시	여수시	여수시	광양시	나주시	여수시	여수시	목포시	목포시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시 최저	나주시	나주시	목포시	목포시	목포시	목포시	목포시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광양시	광양시	목포시	목포시	광양시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현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단위: 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비고
2020	0	0	0	0
2021	74,204,731 (유달경기장판매대금 740억)		74,221,278 (이자수입포함)	
2022	45,343,144 (추경3회 일반회계 전입금 450억)	50,000,000 (추경1회 긴급재난지원금) (추경2회 종합경기장, 지방채상환 기금)	69,547,875 (이자수입포함)	
2023	1,577,084	35,000,000 (각종 일반회계 지출용)	36,124,959 (이자수입포함)	

결론: 2023년도 추경2차에 350억원(약 50%) 지출 후 361억 남게됨.

목포시 의회 요구 자료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차 명 신 *차명신*

제출일자 : 2023. 6. 15.(목)

작성자 예산팀장 정 순 양 *정순양*

자료요구 번호	자료요구 의 원	소관위원회	예산결산 위원회
요 구 자료명	재정안정화기금 2022년 세출예산 사용 내역	실 · 과 · 소명	기획예산과

○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 사용 내역

(단위: 천원)

부 서	세부사업	예산액
합 계		22,356,211
자치행정과	제2차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22,356,211

○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 사용 내역

(단위: 천원)

부 서	세부사업	예산액
합 계		38,800,000
교육체육과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18,600,000
	전국체전대비 종목별 경기장 시설 개보수	5,900,000
기업유치과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14,300,000

목포시 의회 요구 자료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차 명 신 *차명신*

제출일자 : 2023. 6. 12.(월)

작성자 예산팀장 정 순 양 *정순양*

자료요구 번호	자료요구 의 원	최원석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복지 위원회
요 구 자료명	재정안정화기금 제2회 추경(안) 세출예산 편성 내역	실 · 과 · 소명	기획예산과	

○ 재정안정화기금 제2회 추경(안)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부 서	세부사업	예산액
합 계		35,099,790
전국체전추진단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9,850,000
	전국체전 대비 승마경기장 조성	80,000
	양대체전 경기장 긴급 유지보수	700,000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획	178,000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	96,000
	경기장 시설 운영 및 관리	625,093
지역경제과	목포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	1,293,000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1,610,000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사업	1,400,000
	친환경선박 시험형량 실증기술 개발사업	1,400,000
	청년인구과	공공근로사업 <i>7021 (1400 - 600)</i>
수산산업과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1,440,000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건립	1,018,000
건설과	청호시장 옆 도로개설	800,000
교통행정과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5,000,000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1,000,000
건강정책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i>지방재정비중 강요사항</i>	4,000,000
하 수 과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	2,033,000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용역	1,800,000

재정안정화기금의
2022.2023 사용내역 비
교
일반회계성 사업들 예산
을
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을 15%이상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2019순세계잉여금	2020순세계잉여금	2021순세계잉여금	3년 평균	3년 평균의 110%	2022순세계잉여금
4. 긴급하게 실시	665,467,689,000	743,354,235,000	774,237,063,000	727,686,329,000	800,454,961,900	806,474,498,000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청년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성과분석 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	74,205	-	74,205	74,205	232	50,000	△49,768	

II. 분석결과

1. 총 평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시 일반회계 적립금을 재원으로 조성되어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세입보전 필요 시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중임
-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시 활용하기 위하여 여유재원*을 적립하였음.

* 유달경기장 매각대금 등 740억원 적립

2. 사업운영의 성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평가 대상 제외**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 세입보전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 세입보전 필요 시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세(주유달경기장 매각대금 등 여유재원 740억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 기관의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분	지적 내용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각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 자금을 위탁받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의 창출에 기여 목적이며 효율적인 기금수의 운용을 위해 필요

성과분석 보고서에 명시된 분석결과를 확인해보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기금설치 목적 변경 필요성 언급에도 전혀 다른 통합계정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붙여넣기 해놓은 부실한 분석보고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부실한 운영 관리

우려

우려
?!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지방채상환기금까지 대행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목포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목포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회의"의 기능을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기금심의회의의 기능) 기금심의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위와 같
이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명단상 확인해
보니
당연직 5명 빼고 시의원 빼면

☐ 통합재정안정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심의위원 명단

위원회 구성		위원회 명단		비고
당연직	위촉직	소속		
○		목포시		
	○	목포시의회		
	○	교수		
	○	세무사		

○ 위원회 심의회의의 결과(1년) : 별첨

목포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은?



-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의결서

2021. 11.

의안 제2021-6호		2021년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 심의				
연번	소속	직책	성명	심의의견		서명
				적정	부적정	
1	목포시 부시장	위원장	[Redacted]	○		[Redacted]
2	목포시 기획관리국장	부위원장	[Redacted]	○		[Redacted]
3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	[Redacted]	○		[Redacted]
4	목포시 관광문화체육국장	위원	[Redacted]	○		[Redacted]
5	목포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위원	[Redacted]	○		[Redacted]
6	목포시의회 의원	위원	[Redacted]	○		[Redacted]
7	목포대학교 교수	위원	[Redacted]			[Redacted]
8	세무사	위원	[Redacted]			[Redacted]

-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상환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의결서

2021. .

의안 제2021-5호		2021년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의				
연번	소속	직책	성명	심의의견		서명
				적정	부적정	
1	목포시 부시장	위원장	[Redacted]	○		[Redacted]
2	목포시 기획관리국장	부위원장	[Redacted]	○		[Redacted]
3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	[Redacted]	○		[Redacted]
4	목포시 관광문화체육국장	위원	[Redacted]	○		[Redacted]
5	목포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위원	[Redacted]	○		[Redacted]
6	목포시의회 의원	위원	[Redacted]	○		[Redacted]
7	목포대학교 교수	위원	[Redacted]			[Redacted]
8	세무사	위원	[Redacted]			[Redacted]

-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의결서

2022. .

의안 제2022-1호		2022년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 심의				
연번	소속	직책	성명	심의의견		서명
				적정	부적정	
1	목포시 부시장	위원장	[Redacted]	○		[Redacted]
2	목포시 기획관리국장	부위원장	[Redacted]	○		[Redacted]
3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	[Redacted]	○		[Redacted]
4	목포시 관광문화체육국장	위원	[Redacted]	○		[Redacted]
5	목포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위원	[Redacted]	○		[Redacted]
6	목포시의회 의원	위원	[Redacted]	○		[Redacted]
7	목포대학교 교수	위원	[Redacted]			[Redacted]
8	세무사	위원	[Redacted]			[Redacted]

목포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은?



-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의결서 2022 .

의안 제2022-1호 2022년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 심의

연번	소속	직책	성명	심의의견		서명
				적정	부적정	
1	목포시 부시장	위원장	[Redacted]			
2	목포시 기획관리국장	부위원장	[Redacted]			
3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	[Redacted]			
4	목포시 관광문화체육국장	위원	[Redacted]			
5	목포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위원	[Redacted]	○		[Redacted]
6	목포시의회 의원	위원	[Redacted]			
7	목포대학교 교수	위원	[Redacted]			
8	세무사	위원	[Redacted]			

-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의결서 2022 .

의안 제2022-1호 2022년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 심의

연번	소속	직책	성명	심의의견		서명
				적정	부적정	
1	목포시 부시장	위원장	[Redacted]			
2	목포시 기획관리국장	부위원장	[Redacted]			
3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	[Redacted]			
4	목포시 관광문화체육국장	위원	[Redacted]			
5	목포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위원	[Redacted]			
6	목포시의회 의원	위원	[Redacted]			
7	목포대학교 교수	위원	[Redacted]			
8	세무사	위원	[Redacted]		○	[Redacted]

☞ 전문가 구성비율도 안맞
 추고, 서면심으로 의결을 하
 면서도, 심의의결인은 겨우
1명?

**심의과정은 적법한 과
 정?**

이 당시 심의안건은..?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목 포 시



목포시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목 포 시



목포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목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목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목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요

- 기 간 : 2021. 9. 16.(목) ~ 9. 23.(목)
- 심의위원 : 11명 (참석 9명) 【위원장 : 부시장】
- 심의내용 : '21. 12월 말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검토
- 심의안건 및 결과 :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8개 기금

연번	기금명	조성액	담당부서	부서의견	결 과
1	지방채상환기금	45,700	기획예산과	존치	원안가결
2	자활기금	509	노인장애인과	존치	원안가결
3	양성평등기금	1,876	여성가족과	존치	원안가결
4	문화예술진흥기금	3,160	문화예술과	존치	원안가결
5	체육진흥기금	2,473	교육체육과	존치	원안가결
6	중소기업발전기금	6,996	지역경제과	존치	원안가결
7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698	자원순환과	존치	원안가결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18,653	자원순환과	존치	원안가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목포시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2년 목포시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위한 목포시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목포시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

- 기 간 : 2022. 2. 24.(목) ~ 2. 25.(금)
- 심의위원 : 10명(참석 8명) 【위원장 : 부시장】
- 심의내용 : **2022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심의결과 : 원안가결(적정 8)

붙임 목포시 지방재정 공시.계획심의위원회 개별 조서 각 1부. 끝.



목포시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서 면심의



- 2021년 수시 4차 - 목포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보고

- 심사위원회 개최 개요 및 결과
 - 일 시 : 2021. 11. 11.(목) ~ 11. 12.(금) [2일간]
 - 심사 방법 : 서면심사
 - 심사 위원 : 11명 (총 15명)
 - 안 건 : 총 2건
 - 시월애(愛) 목포! 문학 여행(문화예술과)
 - 목포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수도과)
 - 내 용 :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 심사안건 및 심사결과
 - 투자심사: 신규 2건 (적정 2건)

(단위 : 억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심사결과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합계		36	25	0.4	10.6	-		
문화예술과	시월애(愛) 목포! 문학 여행	2	1	0.4	0.6	-	적정	
수도과	목포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34	24	-	10	-	적정	

붙임 개별 심의조서 각 1부. 끝.

- 2022년 수시 1차 - 목포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결과보고

- 개최 개요
 - 일 시 : 2022. 2. 22.(화) ~ 3. 2.(수) [8일간]
 - 심사 방법 : 서면심사
 - 심사 위원 : 15명(14명)
 - 내 용 :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 심사 결과
 - 지방재정 투자심사 : 총 3건 【적정 3건】

(단위 : 억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심의결과	주요의견
	합계	369		
관광과	용해 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	55	적정	
기업유치과	대양산단(주) 소유 대양산단 잔여부지 매입	256	적정	
보건위생과	긴급치료 병상 증축공사	58	적정	

- 지방재정 영향평가 : 총 1건 【적정 1건】

(단위 : 억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심의결과	주요의견
지역경제과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 사업	260	적정	

붙임 개별 심의조서 각 1부. 끝.

- 2022년 수시 2차 - 목포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결과보고

- 개최 개요
 - 일 시 : 2022. 8. 3.(수) ~ 8. 5.(금) [3일간]
 - 심사 방법 : 서면심사
 - 심사 위원 : 13명(10명)
 - 내 용 :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 심사 결과
 - 지방재정 투자심사 : 총 4건 【적정 4건】

(단위 : 억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심의결과	주요의견
	합계	126.75		
관광과	드론 라이트 쇼	1.25	적정	
	목포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	50	적정	
지역경제과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38.5	적정	
진도해양수산과	전국채전대비 부주산 데니스장 개보수	37	적정	

- 지방재정 영향평가 : 총 1건 【적정 1건】

(단위 : 억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	심의결과	주요의견
지역경제과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457	적정	

붙임 개별 심의조서 각 1부. 끝.

목포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서면심

2023년 제2차(수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내역

1 투자사업별 심사 결과 ▶ 5개 사업적정 5

연번	기관별	사업명 (심사구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억원)	투자심사 결과	
						내용	의견
1	목포시 (노인 장애인가)	목포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별관 증축 사업	2023. - 2024.	- 부지면적 601㎡ 지하 1층 ~ 지상 2층(건축면적 820㎡)	45 (국 1.73 도 1.73 시 39.8)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	적정
2	목포시 (도시 디자인과)	양울산 산림욕장-질내 체육관 건 도로개설 공사	2023. - 2026.	- 도로개설 L=650. B=20m	90 (시 90)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	적정
3	목포시 (도시 재정과)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도시)	2023. - 2027.	-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안전확보 등	43 (국 29.3 도 3.9 시 8.9)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	적정
4	목포시 (도시 문화과)	나전칠기 공예품 기증 특별전시회 개최	2023. - 2024.	- 지상 1층(300㎡), 별관 지상층(100㎡) - 해안로 229번길 24-3 의 1필지	2.8 (시 2.8)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	적정

2023년 제1차(수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내역

연번	기관별	사업명 (심사구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억원)	투자심사 결과	
						내용	의견
1	목포시 (청년 인구과)	목포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확충	2023.	- 도로개설(L=500m, B=12m) - 상하수도(L=500m)	23 (시 23)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	적정
2	목포시 (관광과)	전국제진 사전홍보 등 연계프로그램 운영	2023.	- 유달산 불축제, 목포 해상 W쇼, 노을 드론 라이쇼, 항구축제	1.25 (도 0.9) (시 0.79)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	적정
3	목포시 (관광 거점 도시 추진단)	구 목포제진 삼강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설치 사업	2023. - 2024.	- 규모/면적 1,846.6㎡	25 (국 12.9 도 5) (시 7.9)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	적
4	목포시 (스포츠 산업과)	제41회 전국시도대항육 상경기 겸 제31회 전국생활체육 육상경기대회	2023.	- 시도대항전, 2,600 여명 참가	1.8 (도 0.2) (시 1.6)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	적정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에서 결과를 확인해보니

“나전칠기 특별전시회,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분석결과
내용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
되고,

자원조달 대책이 수립

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을 15%이상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목포시 의회 요구 자료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차 명 신 *차명신*

제출일자 : 2023. 6. 15.(목)

작성자 예산팀장 정 순 양 *정순양*

자료요구 번호	자료요구 의 원	소관위원회	예산결산 위원회
요 구 자료명	재정안정화기금 2022년 세출예산 사용 내역	실 · 과 · 소명	기획예산과

○ 2022년 제1회 추경 세출 사용 내역

(단위: 천원)

부 서	세부사업	예산액
합 계		22,356,211
자치행정과	제2차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22,356,211

○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 사용 내역

(단위: 천원)

부 서	세부사업	예산액
합 계		38,800,000
교육체육과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18,600,000
	전국체전대비 종목별 경기장 시설 개보수	5,900,000
기업유치과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14,300,000

목포시 의회 요구 자료

확인자 기획예산과장 차 명 신 *차명신*

제출일자 : 2023. 6. 12.(월)

작성자 예산팀장 정 순 양 *정순양*

자료요구 번호	자료요구 의 원	최원석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복지 위원회
요 구 자료명	재정안정화기금 제2회 추경(안) 세출예산 편성 내역	실 · 과 · 소명	기획예산과	

○ 재정안정화기금 제2회 추경(안)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부 서	세부사업	예산액
합 계		35,099,790
전국체전추진단	목포종합경기장 건립	9,850,000
	전국체전 대비 승마경기장 조성	80,000
	양대체전 경기장 긴급 유지보수	700,000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획	178,000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	96,000
	경기장 시설 운영 및 관리	625,093
지역경제과	목포사랑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	1,293,000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1,610,000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사업	1,400,000
	친환경선박 시험편막 실증기술 개발사업	1,400,000
	청년인구과	공공근로사업 <i>7021 (1400 - 600)</i>
수산산업과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1,440,000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건립	1,018,000
건설과	청호시장 옆 도로개설	800,000
교통행정과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5,000,000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1,000,000
건강정책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i>지방재정비담양사업</i>	4,000,000
하 수 과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	2,033,000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용역	1,800,000

재정안정화기금의
2022.2023 사용내역 비
교
타당성 있는 지출편성?
향후 진짜 재정위기때
는..?

2022 결산서 기재된 지방교부세 세입 감소



세목별 세입 결산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1,369,175,009	1,415,505,840	1,380,230,227	2,089,830	33,185,783
지방세	124,070,000	136,954,027	128,166,224	1,699,007	7,088,796
세외수입	45,173,744	70,065,452	43,579,185	390,823	26,095,444
지방교부세 ✓	378,316,496	372,936,725	372,936,725	-	-
조정교부금 등	28,002,590	42,559,860	42,559,860	-	-
보조금 ✓	473,676,773	467,656,109	467,656,109	-	-

(3)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재원별	계			예산현액 ㉠	예산현액 ㉡	차액 (㉠-㉡)	예산현액 ㉢	예산현액 ㉣
	예산현액 ㉠	결산액 ㉡	차액 (㉠-㉡)					
세입	1,477,325,463,460	1,505,447,637,733	△28,122,174,273	1,369,175,009,460	1,415,505,840	5,379,770,810	2,620,000,000	2,620,000,000
① 지방세수입	124,070,000,000	128,166,223,530	△4,096,223,530	124,070,000,000	136,954,027	5,379,770,810	2,620,000,000	2,620,000,000
지방세	124,070,000,000	128,166,223,530	△4,096,223,530	124,070,000,000	136,954,027	5,379,770,810	2,620,000,000	2,620,000,000
② 세외수입	97,547,321,000	97,584,019,469	△36,698,469	45,173,744,000	70,065,452	5,379,770,810	2,620,000,000	2,620,000,000
경상적세외수입	55,857,532,000	55,418,921,989	438,610,011	15,861,963,000	42,559,860	5,379,770,810	2,620,000,000	2,620,000,000
임시적세외수입	33,054,389,000	31,691,210,530	1,363,178,470	28,810,886,000	42,559,860	5,379,770,810	2,620,000,000	2,620,000,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635,400,000	10,473,886,950	△1,838,486,950	500,895,000	467,656,109	5,379,770,810	2,620,000,000	2,620,000,000
③ 지방교부세	380,966,496,000	375,586,725,190	5,379,770,810	378,316,496,000	372,936,725,190	5,379,770,810	2,620,000,000	2,620,000,000
지방교부세	380,966,496,000	375,586,725,190	5,379,770,810	378,316,496,000	372,936,725,190	5,379,770,810	2,620,000,000	2,620,000,000
④ 조정교부금등	28,322,590,000	42,879,860,000	△14,557,270,000	28,002,590,000	42,559,860,000	△14,557,270,000	20,000,000	20,000,000
시·군조정교부금등	28,322,590,000	42,879,860,000	△14,557,270,000	28,002,590,000	42,559,860,000	△14,557,270,000	20,000,000	20,000,000

2022

목포시 2022 결산서 상 지방교부세 세입이 약 54억원가량 감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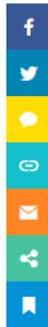
'세수핑크'에 따른 타지자체의 고심과 상



남도일보 **황** 재정자립도 열악한데 세수 감소까지...광주전남, 대책 '고심'

재정자립도 열악한데 **세수 감소까지...광주전남, 대책 '고심'**

김명식 기자 | 2023.06.15 17:23 | 댓글 0



부동산 위축에 국세·지방세 감소
재정악화 따른 재정운용 '빨간불'
사업 재검토 등 세출조정 불가피
강기정 "선택·집중해 건전성 유지"



다른 목소리
헤드라인제주

뉴스 | 해상/조경 | 논단/칼럼 | 기획특집 | 커뮤니티

HOME > 정치/행정 **수입감소에 '적금통장' 갠 제주도, 재정안정화기금 1668억원 투입**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 승인 2023.04.28 11:17 | 댓글 0

추경에 적립액 50% 긴급 투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큰 폭의 수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일종의 '적금통장'인 재정안정화기금을 대거 투입한다.

제주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4128억원 늘어난 총 7조476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액의 50% 수준인 1668억원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순세계영여금의 30% 등을 적립하고 있는 비축 자원이다.

제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이 크게 감소해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및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재정안정화기금이 사용된 사례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당시인데, 당시에도 투입액도 734억원과 291억원에 불과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되면 50%까지 투입해서 예산안에 편성해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추경에 1668억 원을 집중 투입하면서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 보고서 -우리 시 현황



시(市)

브리핑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분석

조회 675 | 1 | 스크랩 0

목표

나라살림 브리핑 313호

2023.06.01

지자체 교부세 6조~6.5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

작성 :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지자체 유형별 부산, 경북, 경남 창원시, 전남 해남군 최다 감소
 열악한 지자체 교부세 감소로 빈익빈 부익부 심화

요약

- 세수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감소액 추정 결과 6~6.5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년동기 진도율 기준 추정시 국세 감소는 35.8조원이며 이에 따른 내국세 감소 등을 감안할 경우 6.5조원이 감소하고, 4월말 전년동기와 비교할 경우 33.9조원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6조원이 감소
- 국세 감소에 따른 정률교부세财源의 축소로 재정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 총액의 비율인 조정률이 대폭 하락, 본 예산 기준 0.8163066에서 세수 감소에 따라 0.7386327~ 0.7443781로 하락
-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결과 지자체 유형별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남 창원시, 전남 해남군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일수록 조정을 하라에 비례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

단체별	재정부족액	당초 보통교부세 산정액(A)	감소분 반영 산정액		감소액		
			①(B)	②(C)	(A-B)	(A-C)	
전북	전주	625,351	510,478	465,498	461,905	44,980	48,573
	군산	640,709	523,015	476,930	473,249	46,085	49,766
	익산	672,237	548,751	500,399	496,536	48,352	52,215
	정읍	648,930	529,726	483,049	479,321	46,677	50,405
	남원	613,252	500,602	456,491	452,968	44,111	47,634
	김제	549,731	448,749	409,208	406,049	39,541	42,700
전남	목포	362,991	296,312	270,203	268,117	26,109	28,195
	여수	525,102	428,644	390,874	387,858	37,770	40,786
	순천	759,586	620,055	565,419	561,055	54,636	59,000
	나주	493,294	402,679	367,197	364,363	35,482	38,316
	광양	365,956	298,732	272,410	270,307	26,322	28,425

나라살림연구소 최근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국세수입 감소 덕분에 지방교부세 세입이 약 260~28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분석함. 그러나 위 자료는 본예산으로 계산한 것으로 **지금 심의중인 추경2차 세입총괄에서 지방교부세 3093억으로 세입 책정해 계산하면.. 위 자료처럼 2702억~2681억 산정된다 가정하여 390~412억이 감소될 것으로 추측..**

전국체전 준비 관련 예산 현황



양대 체전 준비 관련 예산 현황

총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총계	2021년 까지	2022년					2023년			
			합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합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총 계	153,306 국 28,950 도 33,830 시 90,526	64,400	52,789	6,957	-	37,600	8,232	36,117	18,935	4,828	12,354
전국체전 추진단	149,295 국 28,950 도 33,390 시 86,955	64,400	52,789	6,957	-	37,600	8,232	32,106	17,642	2,985	11,479
실·과·소	4,011 도 440 시 3,571	-	-	-	-	-	-	4,011	1,293	1,843	875

전국체전추진단

[단위:백만원]

구 분	총계	2021년 까지	2022년					2023년			
			합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합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총 계	149,295	64,400	52,789	6,957	-	37,600	8,232	32,106	17,642	2,985	11,479
시설비	146,580 국 28,950 도 33,000 시 84,630	64,400	52,500	6,900	-	37,600	8,000	29,680	17,000	2,050	10,630
운영비 (시설비 외)	2,715 도 390 시 2,325	-	289	57	-	-	232	2,426 도 390 시 2,036	642	935 도 390 시 545	849

[단위:억원]

목포시 학술연구용역 현황



연구용역계약 관리대장 및 예산내역

2021	관광과	목포항구축제 발전전략 수립용역	1800만	
2022		목포항구축제 발전전략 수립용역	1800만	
2023		2023 목포 항구축제 기본계획 및 발전전략 수립 용역	1800만	
2021	도시재생과	죽교동 도시재생예비사업 계획 수립 용역	1800만	
2023		죽교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억7천	추경1차심의 예산삭감
2021	지역경제과	목포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연구 용역	920만	
2023		목포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1억	추경2차심의진행중
2020	수산산업과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 학술연구 용역	1380만	
2021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3730만	
2021	기획예산과	원도심 연계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1980만	
2023		목포 유달 만호동 오거리 일원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3억9200만	
2022		2030 목포해안선 주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3억9000만	
2022		(가칭)목포관광공사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181만	예산상 미기재?
2023		(가칭)목포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1억	추경1차심의 예산삭감
2020	환경시설관리과	위생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4380만	
2023		위생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4382만	
2022	자원순환과	제2차 목포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800만	
2022	도시문화재과	2022 목포 문화재야행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1620만	
2023		문화재 야행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1800만	추경1차 통과
2023		목포전통공예전시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980만	예산상 미기재
2022	해양항만과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1791만	
2023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2000만	본예산 미집행
2023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추경2차심의진행중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위한 목포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용역 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학술용역 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

제11조(용역결과 관리) ① 용역 업무(학술용역) 관련 주관 실과소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
과품을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고,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용역 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역 주관부서장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
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 (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실과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실적
2. 중장기계획 및 투·융자 심사목적 및 결과
3. 용역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제4조 (심의대상) ① 용역과제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23.>

1. 학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2.23.>

.....

제5조 (심의절차) ① 제3조에 의거 용역사업 심의는 별표1에 의거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7-1, 2005-7-28, 2009-8-4>

② 기획예산과장은 심의사항을 별표2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7-1, 2005-7-28, 2009-8-4>

제6조 (의안설명) 안건을 제출한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결과의 적용) 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목포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통합메뉴 추천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LANGUAGE

목포시 관광·문화
참여/민원
열린행정
생활·복지
일자리·경제
정보공개
목포소개
새소식/이슈

정보공개

학술용역과제 결과보고서

정보공개 > 재정정보 > 학술용역과제 결과보고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 5px 0;">사전정보공표목록 + <li style="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 5px 0;">행정정보공개제도 + <li style="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 5px 0;">정보공개청구 <li style="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 5px 0;">공공데이터 개방 <li style="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 5px 0;">입찰/계약정보 + <li style="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 5px 0;">주요업무평가 + <li style="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 5px 0;">정책실명제 + <li style="padding: 5px 0;">행정처분현황 	5	목포시 국제슬로시티 회원 가입 추진 용역		최아영	2020-11-19	682
	4	서남권 종합발전 기본구상 용역	📄	정하영	2020-11-17	827
	3	목포-중국 카페리항로 개설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	📄	박미애	2019-12-23	1186
	2	목포-중국 카페리항로 개설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	📄	박미애	2019-12-23	1074
	1	목포-중국 카페리항로 개설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	📄	박미애	2019-12-23	1105

☞ 조례로 제정되어있는 학술
용역
과제 결과보고서 게시판
무늬만 이행하는중?
비공개정보만 빼고 공개
필요



정책연구용
역
정책사업으
로 최대 반
영

연구질보다
양을 늘리려
는 형식적용
역
배제

사전심의기능
강화
공무원 연구
팀 등 자체 연
구능력 배양

갈등요소가
있는 사업
책임회피성
용역도 X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해 경비를 산정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 산정

재정 투융자 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 실시

국가 정책에 반하는 사업 추진 신중히 검토

지방예산 편성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 준수

1. 예산편성과정의 **절차의 적절성**

2. **건정재정의 의무**

3. **지방재정에 관한 전망의 확립**

4. 높은 국가의존도를 해소하고자 **재정자주도 회복 노력**



목포시 어린이집 대하여

- 목포시 어린이집 관리상황 점검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인가 현황
- 목포시 보육계획 수립 필요

목포시 어린이집 현황



목포시 어린이집 현황 (2018.12.~2023.5)

(단위: 개소, 명, %)

연월	계			전국중속률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정원	현원	충족률		정원	현원	충족률	정원	현원	충족률	정원	현원	충족률	정원	현원	충족률	정원	현원	충족률	정원	현원	충족률	정원	현원	충족률
2018.12	208 개소				7			20			1			69			109			1			1		
	11,795	9,039	76.6	81.7	429	324	75.5	2,022	1,312	64.9	120	116	96.7	6,930	5,286	76.3	2,151	1,893	88.0	73	44	60.3	70	64	91.4
2019.12	202 개소				7			19			1			69			104			1			1		
	11,488	8,296	72.2	80.9	429	340	79.3	1,898	1,221	64.3	120	116	96.7	6,842	4,827	70.5	2,056	1,695	82.4	73	32	43.8	70	65	92.9
2020.12	185 개소				11			20			0			63			88			1			2		
	10,874	7,437	68.4	76.4	682	416	61.0	1,949	1,196	61.4	0	0	0.0	6,305	4,410	69.9	1,738	1,301	74.9	50	32	64.0	150	82	54.7
2021.12	175 개소				12			20			0			65			75			1			2		
	10,439	6,858	65.7	76.1	722	459	63.6	1,907	1,112	58.3	0	0	0.0	6,133	4,022	65.6	1,478	1,145	77.5	49	33	67.3	150	87	58.0
2022.12	154 개소				13			19			0			55			64			1			2		
	8,934	5,941	66.5	74.2	776	507	65.3	1,734	1,012	58.4	0	0	0.0	4,982	3,336	67.0	1,243	969	78.0	49	32	65.3	150	85	56.7
2023.05	136 개소				13			19			0			48			53			1			2		
	7,947	4,725	59.5	67.0	776	461	59.4	1,718	871	50.7	0	0	0.0	4,213	2,558	60.7	1,041	722	69.4	49	25	51.0	150	88	58.7

목포시 어린이집 현황2 / 출생아 숫자



목포시 지원시설(국공립,법인어린이집) 원아 현황

연번	기관명	정원	22년현원			23년3월 현원			22년 정원 대비	23년 정원 대비
			유아	영아	합계	유아	영아	합계	(%)	(%)
1	구생	95	31	21	52	31	12	43	54%	45%
2	근화	99	23	34	57	29	18	47	57%	47%
3	꿈나무	92	22	10	32	20	8	28	34%	30%
4	대양	79	22	17	39	17	7	24	49%	30%
5	돌이	99	31	13	44	22	6	28	44%	28%
6	또래	81	30	8	38	18	9	27	46%	33%
7	명도	89	59	9	68	56	2	58	76%	65%
8	백합	99	26	17	43	15	13	28	43%	28%
9	빛과소금	39	0	25	25	0	24	24	64%	61%
10	뽀뽀뽀	87	27	18	45	20	11	31	51%	35%
11	샤론	79	19	28	47	15	19	34	59%	43%
12	성덕	126	50	35	85	37	28	65	67%	51%
13	신나는	153	116	30	146	110	36	146	95%	95%
14	에덴	78	49	29	78	48	22	70	100%	89%
15	중앙	130	22	41	63	51	32	83	48%	63%
16	청운	76	10	7	17	9	3	12	22%	15%
17	태화	72	34	15	49	25	10	35	68%	48%
18	한마음	81	0	57	57	0	36	36	70%	44%
19	신흥	휴원			0			0		
20	희망	유원			0			0		
21	예향	73	24	26	50	24	20	44	68%	60%
22	YWCA	104	31	24	55	12	17	29	52%	27%
23	카리타스	80	45	27	72	38	27	65	90%	81%
24	시립육양	36	0	16	16	0	12	12	44%	33%
25	삿별	75	34	25	59	27	20	47	78%	62%
26	현대	34	0	27	27	0	20	20	79%	58%
27	휴먼시아	31	0	22	22	0	22	22	70%	70%
28	포미4단지	54	0	16	16	0	7	7	29%	12%
29	행복주택	31	0	42	42	0	39	39	82%	76%
30	리솜5차	67	0	40	40	10	30	40	50%	73%
31	서희	77	12	39	51	10	36	46	66%	59%
32	골드9차	40	0	39	39	0	35	35	97%	87%
33	용해5단지	54	4	25	29	10	25	35	53%	64%
34					0			0		
합계		2,430	721	782	1,503	654	615	1,269	61%	52%

목포시 출생 현황

(단위: 명)

연 별	출 생			비고
	계	남	여	
2018	1,271	665	606	
2019	1,189	610	579	
2020	920	483	437	
2021	774	387	387	
2022	796	421	375	

출처: 통계분석시스템

👉 2020년생 920명 유치원

이동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은 공공보육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총원율은



목포시 '어린이집 인가 대책' 손질 시급

만5세 이하 인구 감소 불구 신규 국·공립 시설 인가
기존 시설 총원을 ↓...인건비 지원 못 받는 곳 발생

2023. 05.31(수) 20:26 목포=정해선 기자

본문듣기

UR

목포시의 만 5세 이하 영·유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인가 대책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 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목포시에 따르면 만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는 2006년 2월 1만6천501명에서 2023년 2월 6천608명으로 17년 사이 9천893명(60%)이 급감했다.

시는 200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공급 과정에 따른 보육의 질적 수준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신고제를 인가제로 변경했다.

또 2009-2015년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택지 개발 등 신규 수요 발생 시 제한적 신규 인가, 2016년부터는 보육 수요 감소로 시내 전 지역에 인가를 제한했다. 단 특례시설(국·공립, 직장,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부모협동, 장애아전담사회복지) 등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2013년 목포 시내 어린이집은 222개소였으나 2023년 4월 현재 137개소로 대폭 감소했다.

정원도 1만2천818명(현원 1만517명·총원율 82%)에서 10년 사이 8천20명(현원 4천695명·총원율 58%)으로 정원 대비 총원율은 24%나 줄었다.

타지자체 사례

적법한 절차없이
지자체 내부심사로 전
환어린이집 선정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제멋대로

kbc광주방송 구독자 58만명

조회수 442회 2018. 12. 27.
광양시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절차를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 위원회가 아닌, 자체 기준과 내부 심사뿐만 전환 어린이집을 뽑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기저의 모습입니다.



목포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취소공고

목포시 공고 제2022-1875호 작성일 2022.11.17 등록부서 배자영 / 061-270-3336여성가족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

첨부파일(1) 목포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취소공고.hwp

앞서 목포시 공고 제2022-1817호로 공고된 『목포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건은 세부내용 재검토가 필요하여 취소
붙임 목포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취소공고 1부. 끝.

목포시 공고 제2022 - 1875호

목포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취 소 공 고

앞서 목포시 공고 제2022-1817호로 공고된 「목포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건은 세부내용 재검토가 필요하여 취소 공고합니다.

2022. 11. .

목 포 시 장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삭제<2014-3-31>
2. 복지 및 영유아교육전문가
3.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개정 2013-6-19>
4.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계속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과장이 지명한다.

2013-6-1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전라남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6-19)
5. 그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5. 4.13>

"최대한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목 포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2차 목포시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안내

1. 평소 목포시 보육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23년 제2차 목포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3. 5. 25.(목) 15:00
나. 장 소 : 목포시청 소회의실 (민원동 2층)

다. 참석대상 : 목포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공익단체 및 보육전문가)

- 1) 목포대학교
- 2) 목포YMCA
- 3) 전남서부권

라. 안 건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위탁체 선정 심의
마. 기 타 : 심의자료 당일 현장 배부. 끝.

목 포 시



수신자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교육지원과장), 목포가톨릭대학교목포총장, 목포YMCA,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목포시사회복지사업회

주무관 김보형 보육팀장 이은주 여성가족과장 이형순

협조자

시명 여성가족과-19903 (2023. 5. 22.) 접수

우 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로로 203 / http://www.mokpo.go.kr

전화번호 061-270-8579 팩스번호 061-270-3568 / br4331@korea.kr / 비공개(5)

「제104회 전국제정·제43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법」, 2023년 10월~11월 여러분을 목포로 초대합니다.
본서관리카드여성가족과-19903 1/1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보육계획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고 지역 주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시 이를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 보육계획은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법 제12조) 및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법 제26조)을 포함해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어린이집 평가등급 목표율을 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보육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어린이집이 난립하거나,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해야 함(법 제13조제2항)

어린이집 유형별 종류변경 등 가능 여부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장애아	기타					
종류 변경 가능 여부	X	X	X	X(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제3호 및 제4호) ○ (기타)	○	△	X	X

■ 인가제한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종류 변경 불가

- 종류 변경을 원할 경우 폐원 후 신규인가 절차 진행
-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민간·가정)의 경우 아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내용을 준용
 -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

■ 인가제한을 받는 어린이집은 (정원 증감과 용도변경을 전제로) 종류 변경 판단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바 타 종류로의 변경 불가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은 당해 목적 수행을 위해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타 종류로의 변경 불가
- 기타 (종교단체 등이 설치한)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정원 감원 용도변경 전제)으로만 종류 변경 가능
-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은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하는 바 주민공동시설을 벗어난 곳으로의 소재지 변경 불가
- 민간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정원감원 전제) 및 법인·단체등어린이집으로만 종류 변경 가능
- 민간어린이집 매입 등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폐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절차 진행
- 가정어린이집의 민간어린이집으로의 종류 변경은 정원 증원과 용도 변경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변경 불가 원칙. 다만, 정원 증원과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2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개정 2013-6-19>

제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공립어린이집은 보육계획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산업단지 지역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6-19>

제8조(위탁운영) ① 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6-19>

② 시장은 수탁자와의 위·수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 체결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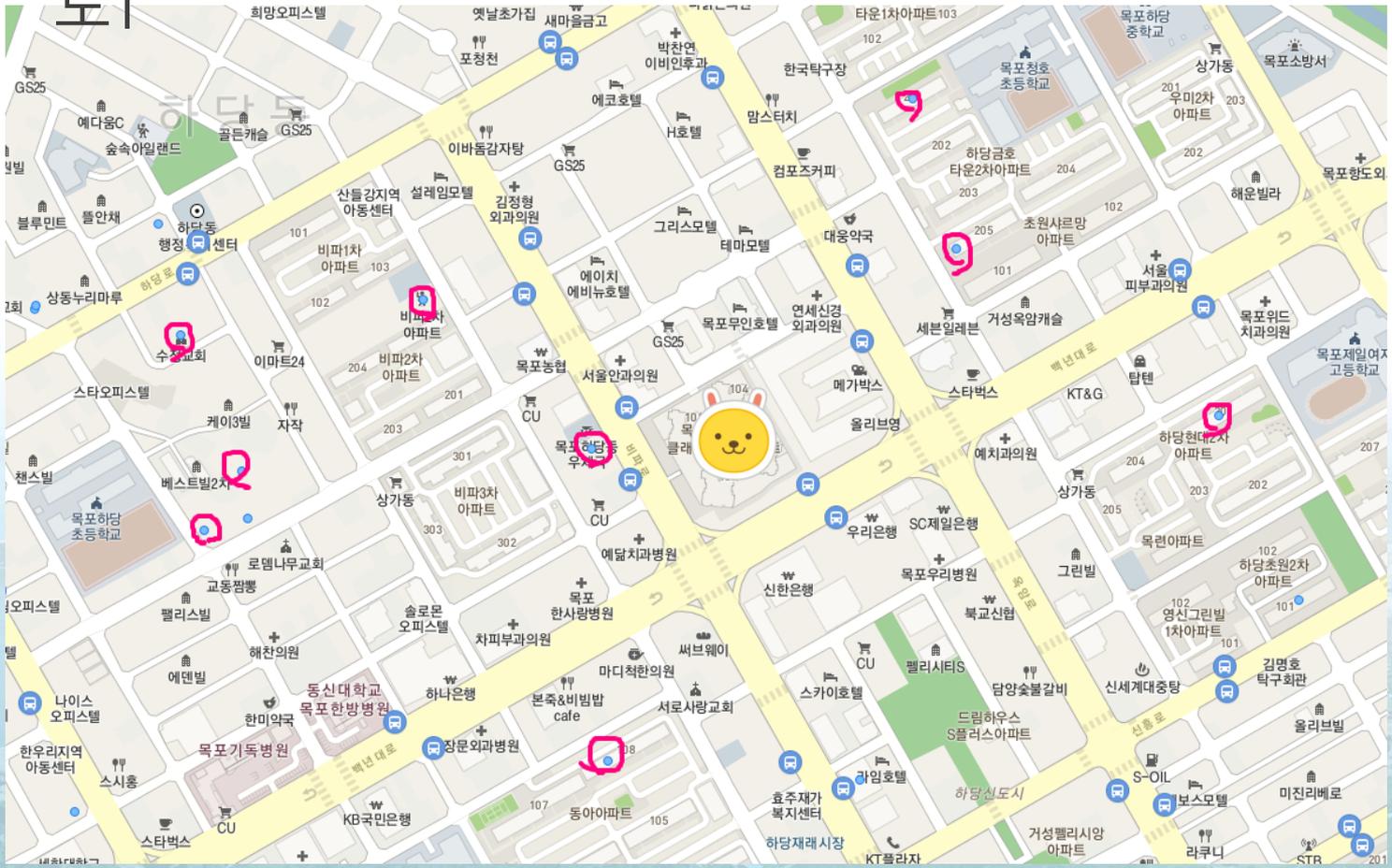
☞ 목포시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꼼꼼한 보육수요조사 토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인가 심의

목포시 신규어린이집 근처 기존어린이집 배치



도1





례 서천군, 서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 류신 기자 | © 입력 2023.02.17 16:18 | © 수정 2023.02.17 16:19 | 댓글 0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환 대상에 선정
서천군과 10년간 무상 임대계약 체결

[서천=뉴스세상] 류신 기자=서천군이 17일 서면어린이집 대표자와 국공립 전환에 따른 부지-건물 사용 및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서면어린이집은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2022년 12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023년 3월 1일부터 국공립으로 전환 개소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사업은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원장이 소유한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와 10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운영자가 운영권을 5년간 유지한 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김기웅 군수는 "앞으로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UDE



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했더니 이런 점이 좋아졌어요 | MBC중북NEWS

MBC중북NEWS 구독

10 5 공유 댓글

조회수 2천회 4년 전
[경기] 충청도 최근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아파트 일차층에 새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다

댓글 2개 댓글 기문

동네 교회·문 닫는 어린이집 24곳...'입장료 3000원' 키즈카페 탈바꿈

최해련 | 입력 2023. 5. 30. 18:24 | 수정 2023. 5. 31. 00:30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확대
2026년까지 400곳 목표



서울 광진구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지난해 문을 연 '서울형 키즈카페' 내부 모습. 서울시 제공

올해 서울 시내 동네 교회와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 등 24곳에 입장료 3000원의 저렴한 키즈카페가 조성된다.

30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교회 9곳을 비롯해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 민간 시설 11곳을 포함해 총 24곳에 이 같은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설계에 들어가 하반기에 모두 공사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0세 영아부터 9세 이하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서울시에서 리모델링비를 최대 12억원(㎡당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신 각 교회, 아파트, 어린이집 등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공간의 소유주는 이 장소를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시설 중사자 인건비, 프로그램비, 공공금 납부료 등 운영비도 자치구와 협력해 100% 지원한다. 놀이기구 유형 및 세부 프로그램은 자치구와 협력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가 작년 8월 발표한 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100곳(올해 50곳 개관), 2026년까지 400곳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종로구 혜화동, 중랑구 면목4동, 양천구 신정7동, 동작구 상도3동, 성동구 금호2·3가동, 강동구 고덕2동, 강동구 암사1동, 광진구 중곡3동 등에서 8개의 키즈카페를 운영 중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24곳 중 13곳은 종전처럼 공공시설로 조성되지만 11곳은 민간시설을 활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서울시 관계자는 "키즈카페를 새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땅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기존 민간 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미끄럼틀과 같은 일반적인 놀이시설 대신 블록 쌓기, 그물놀이 등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활발하게 자극하는 시설이 많아 호응이 좋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교회 등 종교시설 가운데는 키즈카페 아이디어를 반기는 곳이 많다. 저출생으로 신자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교인 및 지역 주민들과 활발하게 접점을 넓힐 수 있어서다. 62년 된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좌제일교회의 이재면 담임목사는 "출생아 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가운데 누구나

유보통합 시범교육청에서 전남은 배제



9월부터 유보통합 시범 운영... "또 땀질 운영?" 커지는 불안 / YTN

유보통합 하반기 첫발

현장선 '땀질 운영' 우려

전체화면을 종료하려면 **Esc** 음(聒) 누르세요.



유보통합 시범교육청 9곳 선정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인천, 경기, 충북, 전북

유아학비 경감

대구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대구, 경기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교육과정 운영

서울, 세종, 충북

교사 역량 강화 지원

서울, 대구, 세종, 충북, 전북, 경남

外 총 13개 과제 482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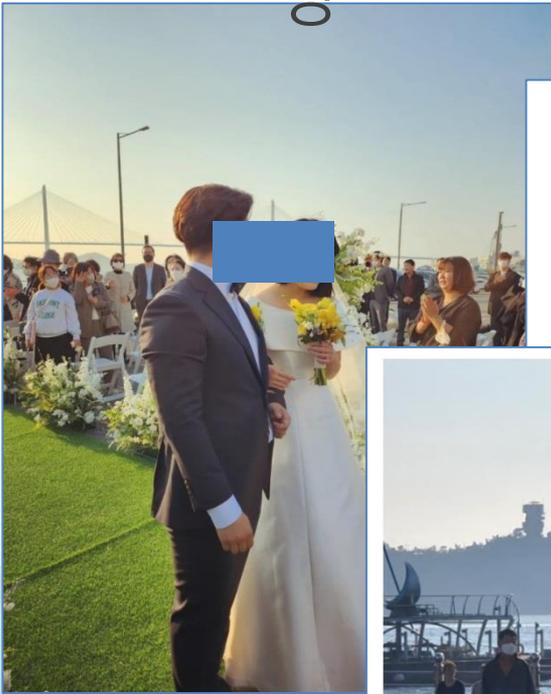
(교육청 424억, 지자체 58억)

목포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 청년을 떠나가게 만든 목포시 행정
- 목포시 결혼친화환경 조성 필요성
- 공공시설물을 시민에게로



목포의 명소를 활용한 목포청년의 야외웨딩 현장



일상

[야외웨딩] - 목포바다가 보이는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 결혼식

먹고놀기 2022. 10. 18, 0:27

신안비치호텔

저번주 토요일은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목포에서 야외결혼식 축하합니다.

시라비 2022. 10. 18, 23:00

일이 찾아 오셨네요.
기쁘서
케스르 하셨습니다.
리는 신부님이라서 허안 전사같이 예쁜

일상, 생각

목포 바다 야외 결혼식 & 목포 여행 - 케이블카, 낙지 볶음 목포맛집

루시 2022. 10. 16, 15:17



목포시 공원관리 사용조례 및 문화예술회관 조례



제11조 (사용허가 등) ①공원구역 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29>

1.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2. 물품의 판매, 사진촬영,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3. 공원시설물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할 때
4. 시민의 종을 타종하거나 천자총통 체험 행사를 하고자 할 때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1. 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부채납원 1부

③제1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개정 2008·12·29, 2012·6·11>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	제출년월일 : 1999. 4. 14 제 출 자 : 목 포 시 장
----------	----	--

1. 제안이유

-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 예식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할 야외결혼예식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규제개혁 추진회의 확정과제로 선정된 사용자 징수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당한 사용자 반환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야외결혼예식장 사용시간 및 사용자 신설(안 제6조)
 - 사용시간 및 횟수 : 1회당 1시간, 1일 3회
(11:00~12:00, 12:30~13:30, 14:00~15:00)
 - 시설사용료 : 1회 100,000원(장소사용)
 - ※부대비용(식당, 사진등)은 결혼당사자가 부담
 - 기타사용료 : 1회 50,000원(예식비품일체)

- 사용료의 반환 (안 제6조)
 - 전액반환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사용자가 취소·정지되었을때
 -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혀 사용않은 경우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 위약금(10퍼센트) 공제후 전액반환
 - 사용예정일 5일이내에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5. 관 계 법 령 : 해당없음**
- 6. 관련부서의견**
- 지역경제과 : 물가심의 대상이 아님(지경41600-381, '99. 2. 19 회시)
- 7. 예 산 상 황 : 해당없음**

청년의 고충, 막대한 결혼비용..



매거진 **한경** **한경BUSINESS** **MONEY** **hankyung JOB & JO**

태그 스페셜 산업 재테크 CEO ESG

종 > 한경BUSINESS

성인 70% "결혼자금, 가족 도움 필요해"...10명 중 5명 '결혼식 비용, 3000만원 이상 필요'

일력 2023.05.23 10:42 | 수정 2023.05.23 10:42

가사돌기

가장 적절한 결혼 비용 수준으로 '3,000만 원 미만(44.6%)'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아 결혼을 위해 반드시 돈을 들여야 하는 것 1순위 '주택', 2순위 '신혼여행', 3순위 '예식장' 결혼 준비에서 가장 비용 부담이 되는 것 1위 '주택', 2위 '혼수', 3위 '예물'



편순재테크
나의 눈물겨운 결혼식비용 줄이기大作전

mrs_ing | 2023. 5. 11. 0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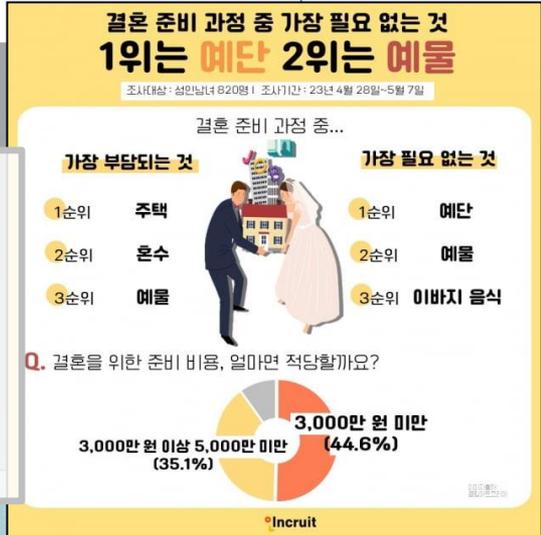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 우리 2030세대들 결혼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나도 결혼할때 드는 비용이 무서워 처음에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다고 가족에게 당당히 선언을 했으나...

한국에서의 결혼식이란 부모님의 행사라 결코 부모님의 뜻을 꺾을 순 없었다.

우리는 특히나 국제커플이라 이런저런 색다른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한국 결혼식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1700만원 선으로 방어했던 나의 경험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 준비 절차와 규모를 줄여서 진행하는 스몰웨딩 설문 △매우 긍정적(51.0%) △대체로 긍정적(42.8%) △대체로 부정적(4.9%) △매우 부정적(1.3%)'으로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스몰웨딩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목포인근 야외결혼식 운영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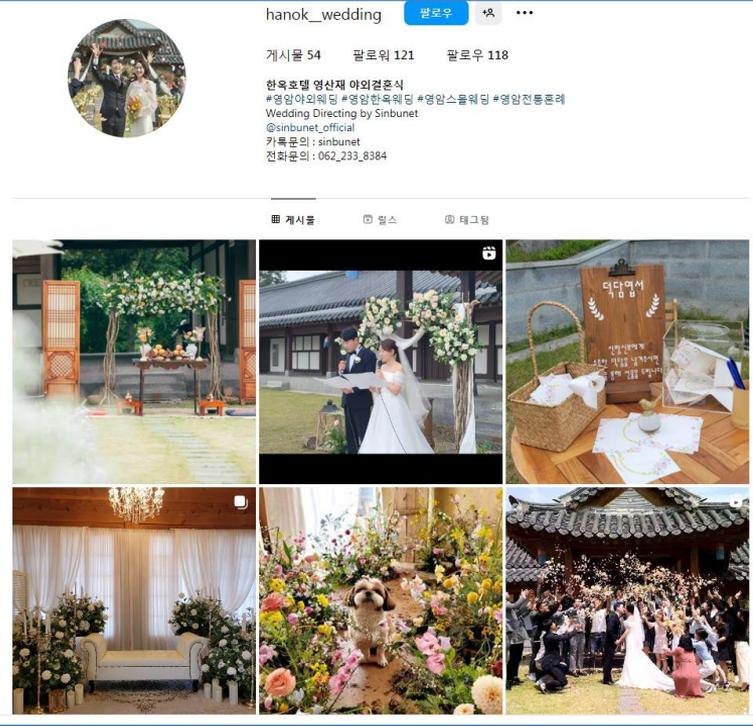
지호가족 이야기

목포 현대 호텔 야외 결혼식~!!

지호아빠 2020. 7. 9. 15:32 URL 복사 +이웃추가

오늘 글은 목포에서 야외 결혼식을 준비하는 곳을 추천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야외 웨딩은 일반 예식장에 비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으나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랄
 거요~

저는 광주권에서 야외 결혼식을 디렉팅 하는 웨딩플래너입니다.
 장소에 광주뿐만 아니라 목포에도 야외 예식 디렉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작년 목포 현대호텔과
 협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공간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HOME > 정치 > 국회

'완도에도 공공예식장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3-02-21 09:15:05

f t y g P N

국의회 조영식 의원'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해 조례'발의



▲ '완도에도 공공예식장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완도군의회 조영식 의원이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예식장 서비스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영식 의원이'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의 확산 및 건강한 결
 혼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공예식장 조성 등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완

서울의 나만의 결혼식 공공예식장 현황



나만의 결혼식 공공예식장 현황 (2023.5.4. 현재)

연번	시설명	사진	구	상세주소	유형	수용 인원	대관료 (8시간 기준)	특이사항 (※자세한 사항은 종합상담시 문의)	운영일정 (※종합상담후 확정)	전담협력업체	연번	시설명	사진	구	상세주소	유형	수용 인원	대관료 (8시간 기준)	특이사항 (※자세한 사항은 종합상담시 문의)	운영일정 (※종합상담후 확정)	전담협력업체
1	북서울 공원숲		강북구	월계로 173	야외 (공원)	300명 내외	14,000원	○ 야외데크 사용시 도시락, 케이터링 가능 ※ 한옥공간 음식물 반입 불가(문화재) ○ 주차장 협소, 하객 대중교통 이용	○ 4.5.6.9.10월 매주 토요일 ⇒ 4월(7,13,15,16,23,29,30), 5월(6,13,14,20,21,27,28), 6월(3,10,11,17,18,24,25), 9월(2,9,10,16,17,23,24), 10월(7,14,15,21,22,28,29)	플꽃웨딩	8	한강공원 물보따리대움		영등포구	여의도역 84-1	야외 (공원)	100명 내외	오전 1,000,000원 오후 1,200,000원	○ 케이터링 가능 ○ 주차장 협소, 하객 대중교통 이용 ※ 주차시 돌출행 차량행에 따라 시설 폐쇄 가능(반려견)	○ 4/29, 5/27, 6/24	플꽃웨딩
2	시민안전체험관 다목적홀 (보라매)		동작구	여의대방로20나길 16	실내	120명 내외	102,090원	○ 다목적홀(비 승): 1층 부피 일부 사용 ○ 음료, 케이터링 가능 ○ 주차장 협소(보라매공원내 소채), 하객 대중교통 이용	○ 4월-12월 2주 매주 토요일 ⇒ 4월(1,8,15,22,29), 5월(6,13,20,27), 6월(3,10,17,24), 7월(1,8,15,22,29), 8월(5,12,19,26), 9월(2,9,16,23,30), 10월(7,14,21,28), 11월(4,11,18,25), 12월(2,9)	그린웨딩포럼	9	성북역역사		성북구	성북로 31길 97	야외 (한옥)	130명 내외	500,000원	○ 도시락, 케이터링 가능 ○ 주차장 협소, 필로시 셔틀버스 운영	○ 4.5.6.9.10월 매주 토요일 ⇒ 4월(2,9,16,23,30), 5월(7,14,21,28), 6월(4,11,18,25), 9월(3,10,17,24), 10월(8,15,22,29)	루디아 프로젝트
3	서울시립대 자치대루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야외 (정사)	200명 내외	480,000원	○ 음료, 케이터링 가능 ○ 주차장 협소, 하객 대중교통 이용	○ 5/12, 5/14, 5/20, 5/21, 6/7, 6/18, 9/2, 9/3, 9/10, 9/16, 9/17, 10/7, 10/8, 10/15, 10/29	플꽃웨딩	10	한방진흥센터 1층마당		동대문구	역명중앙로 26	야외 (한옥)	130명 내외	무료	○ 음식물반입 불가(단, 음료 가능) ○ 주차장 이용 가능(공영주차장) ○ 소관 시설에서 전통레스토랑 희망	○ 4.5.6.9.10월 매주 토요일 ⇒ 4월(1,8,15,22,29), 5월(6,13,20,27), 6월(4,11,17,24), 9월(2,9,16,23), 10월(7,14,21,28)	그린웨딩포럼
4	인재개발원 (인재홀)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로 58	실내	250명 내외	무료	○ 음식공간내 음식물반입 불가 ○ 구내에서 사용 가능(유류) ○ 주차장 협소, 하객 대중교통 이용	○ 7/1-2, 7/9(일), 7/15-16, 7/22-23, 7/29-30, 8/5-6, 8/13(일), 8/20(일), 8/27, 9/2-3, 12/2-3, 12/10(일), 12/17(일), 12/23-24 ※ 그 외 가능일 사전협의	그린웨딩포럼	11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영등포구	국회대로44길 10	실내	100명 내외	400,000원	○ 케이터링 가능 ○ 주차공간 없음, 하객 대중교통 이용	○ 4/8, 5/13, 6/10, 7/8, 8/5, 9/9, 10/14, 11/11	사회적협동조합 배라
5	시민정 (태평홀, 동그라미방)		중구	세종대로 110	실내	100명 내외	무료	○ 시설내 축의금 접수 불가 ○ 음식물반입 불가 ○ 주차장 협소, 하객 대중교통 이용 ※ 시청 주변 집회시 교통이 불편할 수 있음	○ 4/22, 5/20, 6/17, 7/15, 8/19, 9/16, 10/21, 11/18, 12/16	사회적협동조합 배라	12	강북 노동자복지관		마포구	한일길 13	실내	100명 내외	400,000원	○ 케이터링 가능 ○ 주차공간 없음, 하객 대중교통 이용	○ 6-11월 매주 일요일 ※ 2-3개월 전 일정 별도 협의 필요	루디아 프로젝트
6	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실내	200명 내외	300,000원	○ 케이터링 가능 ○ 주차장 협소, 하객 대중 교통 이용	○ 8/1, 8/23, 9/10, 9/24, 10/8, 10/22, 11/12, 11/26, 12/3, 12/10	그린웨딩포럼	13	한강시민공원 관니루 정미방		강동구	선사로 83-106	야외 (공원)	150명 내외	무료	○ 도시락 가능 ○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유료)	○ 5.6.9.10월 24번째 토, 일요일 ⇒ 5월(13,14,21,28), 6월(10,11,24,25), 9월(9,10,23,24), 10월(14,15,28,29)	사회적협동조합 배라
7	서울시정 본관중앙 다목적홀		중구	세종대로 110	실내	100명 내외	협의중	○ 음식물 반입 불가 ○ 주차장 협소, 하객대중 교통 이용 ※ 시청 주변 집회시 교통이 불편할 수 있음	○ 6/18, 7/16, 8/20, 11/19, 12/17	루디아 프로젝트	14	서울자연과학공원 숲속의무대		광진구	농동로 216	야외 (공원)	1,000명 내외	400,000원	○ 도시락 가능 ○ 주차장 협소, 하객 대중교통 이용	○ 6/24, 9/23, 10/28	플꽃웨딩
											15	푸른수목원 배림의연막		구로구	서해안로 2117	야외 (공원)	50명 내외	36,800원	○ 케이터링 가능 ○ 주차장 협소, 하객 대중교통 이용	○ 5/20, 5/21, 6/24, 6/25, 9/23, 9/24	사회적협동조합 배라

연번	시설명	사진	구	상세주소	유형	수용 인원	대관료 (8시간 기준)	특이사항 (※자세한 사항은 종합상담시 문의)	운영일정 (※종합상담후 확정)	전담협력업체
16	평화물린터		도봉구	도봉동 1-8	야외 (공원)	200명 내외	520,000원	○ 도시락, 케이터링 가능 ○ 주차장 협소, 하객 대중교통 이용	○ 5.6.9.10월 매주 일요일 ⇒ 5월(7,14,21,28), 6월(4,11,18,25), 9월(3,10,17,24), 10월(8,15,22,29)	루디아 프로젝트
17	문화비죽가지		마포구	중산로 87	야외 (공원)	200명 내외	야외 486,400원 실내 400,000원	○ 실내 음식물 반입 불가, 야외 가능 ○ 주차장 협소, 하객대중 교통 이용	○ 11/11, 12/9 ※ 상당시 변동 가능	사회적협동조합 배라
18	송헌공원		중로구	송헌동 48-9	야외 (공원)	100명 내외	협의중	○ 음식물 반입 불가 ○ 주차장 협소, 하객 대중교통 이용	○ 5/27, 6/24, 11/4 ※ 상당시 변동 가능	사회적협동조합 배라
19	생활용품리자		성동구	자동차시장길49 (용담동)	실내	100명 내외	협의중	○ 케이터링 가능 ○ 주차장 협소, 하객 대중교통 이용	○ 5/13, 6/10, 9/9, 10/14, 11/11, 12/9 ※ 상당시 변동 가능	그린웨딩포럼

타지자체 공공웨딩홀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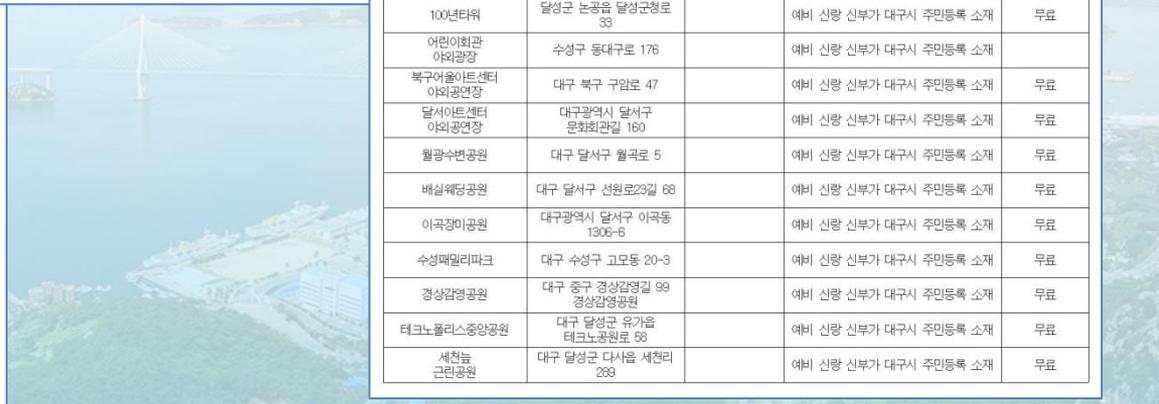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시설명	위치	규모	이용 대상	비용
인천아트플랫폼 야외중앙광장	제물릉로 218번길 3	100명 이상	인천광역시 거주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모집인원의 10%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우선 선발)	무료
헬미도 갑문	중구 헬미도 376	100명	인천광역시 거주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모집인원의 10%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우선 선발)	무료
헬미공원 영진당	북성동 1가 90	100명	인천광역시 거주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모집인원의 10%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우선 선발)	무료
화도진공원	화수도 319-47	100명	인천광역시 거주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모집인원의 10%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우선 선발)	무료
인천도호부관아	매소홀로 589	100명	인천광역시 거주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모집인원의 10%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우선 선발)	대관료
센트럴마크 UN광장	련번시대로 160	100명	인천광역시 거주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모집인원의 10%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우선 선발)	무료
해돋이공원	해돋이로 51	100명	인천광역시 거주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모집인원의 10%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우선 선발)	무료
미추홀공원	해송로 59 갯벌문화관	100명	인천광역시 거주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모집인원의 10%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우선 선발)	무료
인천대공원	무내미로 238	200명	인천광역시 거주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모집인원의 10%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우선 선발)	무료
논현대 그린공원	호구모로 203-31	150명	인천광역시 거주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모집인원의 10%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우선 선발)	무료
경인아라뱃길 수향원	계양구 장기동	100명	인천광역시 거주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모집인원의 10%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우선 선발)	무료
경인여대 컨벤션홀	계양산로 63	100명	인천광역시 거주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모집인원의 10%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우선 선발)	무료
아라뱃길 대화동산	서천동 48-3	100명	인천광역시 거주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모집인원의 10%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우선 선발)	무료
청리호수공원 (정리부)	경서진로 410	200명~300명	인천광역시 거주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모집인원의 10%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우선 선발)	무료
청리호수공원 (율리분수)	경서진로 410	100명	인천광역시 거주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모집인원의 10%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우선 선발)	무료
청해문화공원	청리커널로 269	100명	인천광역시 거주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모집인원의 10%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우선 선발)	대관료
꾸지나무	영흥면 내리 201-18	100명		대관료
비치클럽	영흥면 내리 201-19	50~80명		대관료 (주중, 일요일 무료)

부산광역시		
시설명	위치	규모
총합사 야외 전통 혼례장	동래구 총합대로 945	
총합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동래구 총합대로 945	
부산광역시 남구청 구민광장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평화공원	부산 남구 대연동 707	
부산저항공단 스포츠클럽기숙공원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324 스포츠클빅	
수영사적공원 (야외)	부산 수영구 수영동	

경기도 공공웨딩홀				
시설명	위치	규모	이용 대상	비용
경기도 (구) 청사 잔디마당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100명	도 거주 또는 주소지를 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지에 한함	2시간 5만원
경기도 성남시청 너른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해당 없음	성남시민 가능	무료
여주 세종문화재단 감고당	경기 여주시 명성로 71	250명	전통 혼례만 가능 (이용 제한 없음)	평일 3시간 25만원 주말 3시간 28만원
고양시청 일산 호수공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10	50명 이하	성인이면 누구나 (중복 접수 시 고양시민 우선)	무료

대구광역시				
시설명	위치	규모	이용 대상	비용
100년터워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예비 신랑 신부가 대구시 주민등록 소재	무료
어린이회관 야외광장	수성구 동대구로 176		예비 신랑 신부가 대구시 주민등록 소재	무료
북구어울아트센터 야외공연장	대구 북구 구암로 47		예비 신랑 신부가 대구시 주민등록 소재	무료
달서아트센터 야외공연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		예비 신랑 신부가 대구시 주민등록 소재	무료
월광수변공원	대구 달서구 월곡로 5		예비 신랑 신부가 대구시 주민등록 소재	무료
배설역당공원	대구 달서구 선원로29길 68		예비 신랑 신부가 대구시 주민등록 소재	무료
이곡정이공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306-6		예비 신랑 신부가 대구시 주민등록 소재	무료
수성매일리파크	대구 수성구 고오동 20-3		예비 신랑 신부가 대구시 주민등록 소재	무료
경상감영공원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9 경상감영공원		예비 신랑 신부가 대구시 주민등록 소재	무료
테크노폴리스중앙공원	대구 달서군 유가읍 테크노폴리로 58		예비 신랑 신부가 대구시 주민등록 소재	무료
세천류 근린공원	대구 달서군 다사읍 세천리 289		예비 신랑 신부가 대구시 주민등록 소재	무료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하는 결혼식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결혼식'

취약계층에게 아름다운 자연 속 결혼식 기회 제공



국립공원 친환경 숲속 결혼식 운영 사진(순수국립공원 영취동 남산 결혼식)

국립공원공단은 취약계층에게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결혼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은 2021년 9개 공원 27회를 시작으로, 전년도 10개 공원에서 30회를 진행했다. 올해는 17개 공원 35회로 확대하여 참여 기회의 폭을 넓혔다.

'친환경'스물' 웨딩 원한다면, 여기 어때 ... 용산가족공원.남산 호현당 '그린웨딩'

✎ 북요한 기자 | 📅 승인 2022.04.01 16:32 | 💬 댓글 0

자연형 친환경·소규모 '그린웨딩' 운영 ... 방역지침 준수 하에 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배경으로 1일 1예식 지원
2022년 하반기(9~10월) 결혼식 앞둔 예비부부 대상 4.1부터 신청접수



용산가족공원 예식과 남산 호현당 예식 모습

[컨슈머와이드-북요한 기자] 서울 '용산가족공원'과 '남산 호현당'에서는 올 하반기 야외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는 16쌍의 예비 신랑신부를 기다리고 있다.

1일 서울시는 올 하반기(9월~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남산 백범광장 인근의 전통가옥 '남산 호현당(전통혼례)'과 국립중앙박물관과 인접한 '용산가족공원'에서 운영되는 공원 내 '그린웨딩'에 참여할 예비부부 16쌍을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기뉴스

- 1 [가치소비·시승기] 토요일
- 2 자외선차단제 계절·현명한 신
- 3 [Reporter's note] As vegan tu
- 4 [Reporter's note] Cultural con
- 5 [Tip-off] Illegal street vendors
- 6 [Consumption value-ESG] Th
- 7 [Consumption value-Field Int
- 8 [Column-Senior Welllife- Con
- 9 [Consumption value-May pro
- 10 [가치소비·현장] '유아부터 친

뉴스투데이



컨슈머와이드 < [가치소비·현장포토] '그림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간을 개방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고경욱 의원 발의

-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공공시설 개방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
-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신청 및 허가과 이용허가 제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제9조에서는 시민 등의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관리자가 특정 이용자 등의 계속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 제10조에서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공공시설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
- 제11조에서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지방자치법 제15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방공간 이용자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
- 제12조에서는 공공시설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
- 제13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14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명시
- 제15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르도록

👉 **조례 준비가 완료되면 적극적인 결혼친화적 정책시행 필요**



세상 어떤 **어려움**에는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반드시 있는데

그 방법과 방향을 아직 **못 찾았을 뿐** 일 것입니

다.

